

古文書 用語解説 (上)

金 光 永
서울大文理大圖書館

註 <註> 古文書는 그 의미가 대체로 文字로써 표현되어 있는 것이요, 동시에 이를 發給한 與者 아울러 이를 받을 對象인 受者, 즉 主格과 對象사이에 어떤 作用을 미치는 要件이 구비되어 있는 갑오경장 이전의 문서를 지칭한다. 古文書는 史學研究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史料, 내지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價值가 높이 評價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고문서의 분포상황을 보면 대체로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 60,000枚, 국립중앙도서관에 13,000枚,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15,000枚,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10,000枚,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5,000枚, 장서 각에 件記 1,000點이 수장되어 있다. 이러한 고문서의 충분한 연구가 수반되어 활용되어야 할은勿論이다.

그러나 귀중한 史料로서의 古文書에 대한 整理가 아직도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도서관에 있어서 古文書의 分類表, 내지는 記述 目錄法에 관한 기준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도서관에 있어서 古文書의 整理, 말하자면 分類, 目錄을 위한 선행 과정으로써 古文書의 用語에 대한 간략한 解說을 소개코자 하는 것이다.

家蓋文記 : 집의 터전에 관한 文書이다.

家屋文記 :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文書이다.

股本標 : 國內 准公文書로서 오늘의 共同 出資의 株券에 해당하는 證券이다.

簡札 : 書簡紙에 쓴 便紙이다.

甘結 : 國內 官 公文書로서 上級 官衙에서 下級 官衙에 내리는 文書이다.

勘合 : 國내 官文書로서 戶·兵·刑曹副文書이며, 錢·糧·發兵·發馬·檢屍·大辟 등에 관한 移文, 元簿을 접어 볼이고, 踏印후 半行으로 나누어 後考에 依憑한다. 現在의 契印과 같은 가능이다.

件記 : 물건의 物록을 적은 署기(글)이다.

檢屍單子, 檢狀 : 官文書로서 刑曹 文書인데, 尸體를 檢索하고 올리는 單子이며, 일명 檢屍狀이다.

結案 : 國내 官文書로서 刑曹 文書인데, 推案으로써 死罪를 確定짓는 判決文이다.

啓 : 國내 上奏文書로서 王←臣 公文書인데, 臣下가 政務에 관하여 上奏하는 文書이다. 이에 上覽에 供하는 文書를 「啓本」이라 하고, 啓本에添付되는 目錄이 「啓目」이다. 啓에는 種類가 많은 重要한 文書로서, 大事는 「啓本」으로 하고,小事는 「啓目」으로 한다. 啓에는 다음과 같은 種類가 있다.

「直啓」 : 二品衙門이 屬曹를 거치지 아니하고 上奏하는 啓文이다.

「密啓」 : 秘密의 上奏, 내지는 秘密의 啓辭이다.

「抄啓」 : 官員 候補者的 名單을 抄錄

하여 注擬(上奏)하는 것(吏·刑曹文書이다).

「回啓」 : 國王의 下問에 대하여 審議하여 上答하는 文書이다.

「查啓」 : 監司등이 調査한 바를 上奏하는 文書이다.

「書啓」 : 奉命官의 奉命書로서 暗行御史의 上啓동이 있다.

「傳啓」 : 이미 處罪된 者의 姓名과 罪名을 列記하여 兩司에서 上奏하는 文書이다.

「臺啓」 : 司憲府, 司諫院 兩司의 啓辭이다.

「合啓」 : 三司 중 兩者, 또는 三者の 連名 啓辭이다.

「塘啓」 : 暗行御史의 上啓이다.

「啓覆」 : 國王에게 上奏하여 死刑罪人(正刑)을 다시 審理하는 것이다.

「啓下文書」 : 上啓로서 裁可를 받은 文書이다.

糸圖 : 代代의 系統을 表示한 표이다.

啓目 : 國내 上奏 官文書로서 王←臣 公文書인데, 上奏文의 하나이고, 殿最, 推考는 다 啓목으로 취급한다.

啓辭 : 王←臣 公文書로서, 論罪에 關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上奏文書이다.

契約書 : 契約의 成立을 證明하는 것이다.

契標 : 國내 准公文書로서, 稽員의 權利義務를 表示하는 證券이다.

願命 : 國내 國王文書로서, 王←臣 文書인데, 王이 崩御할 때 國事에 관하여大臣에게 遣言하는 命令, 또는 命令書이다. 「大典會通」에는 奎章閣에서 管理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여, 奉謨堂에 奉安한다.

誥命 : 宮내 内命婦의 教旨를 말한다.

告目·單子 : 國내 私對私 文書로서, 式化된 간단한 書札, 말하자면 卑賤한 사람으로부터 尊貴한 사람에게 보내진 書翰이다.

告示 : 榜印.

告身 : 官員任命의 辞令書로서, 官職에任命된 者의 辞令書는 五品이하이면 司憲府, 司諫院의 署經을 考覈하여 吏曹에서 이를 授與한다. 위의 署經이 諫院下官으로 처음任命하라는 王命이 있으면 吏曹에서는 被任者の 身元을 調査하여, 그 與否를 共同署名하여 同意를 表함을 말한다. 이 文書를 署經單子라고 한다.

古風 : 임금이 習射하다가 살을 맞히면 모시었던 臣下들에게 상을 주는 일이다.

空名帖 : 國내 官·公文書로서, 官→民文書이며, 禮曹文書인데, 말하자면 나라의 財政이 窮乏할때, 銀·米·錢·粟을 받고 官位를庶民에게 팔았으니, 본인의 姓名을 空白으로 남긴 地方官에게 그것을 記入하여 本人에게 交付하는 權限을 委任했던 辞令書이다. 度牒에도 空名度牒이 있다.

貢物文記 : 궁중이나, 政府에 바치던 것을 적은 文書이다.

供辭 : 罪人의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功臣子孫世系)單子 : 國내 私文書로서 功臣들의 子孫들이 바치는 申告單子이다.

供招草記 : 犯罪事實을 진술하는 草記이다.

關 : 國내 官公文書로서, 官→官 公文書, 환언하면 官共通文書인데, 同等官衙 상호간에 授受되는 官用文書이다.

同等以上의 문서는 「牒呈」이다.

關予：上官이 下官에게, 또는 上級官廳이 下級官廳에게 보내는 公文書이다.

官案：1) 벼슬 아치의 이름을 적은 것 이다.

2) 官吏의 성적을 매겨 褒貶의 참고 자료를 만들기 為한 것이다.

3) 각 마을의 이름과 그곳에 팔린 벼슬 이름을 적은 것이다.

官下記：地方官員의 會計 帳簿이다.

敎：이를 敎書라고도 하는데, 즉 王의 訓諭을 敎라고 한다.

敎命：國內國王文書로서, 王←妃·王世子 公文書인데, 王妃·王世子를 冊封하는 訓諭文書이다. 寶는 「施命之寶」를 사용하였다.

敎書：國內國王 文書로서, 王→臣 公文書인데, 國王의 訓諭文書이다. (四品 이상의 告身(任命書)은 敎旨라 한다.) 「文公雕龍」에 「王侯稱敎」라 하였다. 麗代에는 敎書, 麻制, 或은 官誥를 각一字씩 대었다.

敎首：四品 以上의 벼슬의 辞令 官誥, 官敎, 王首이다.

敎諭書：敎書와 諭書이다.

敎旨(告身)：國內 國王文書로서, 王→臣 公文書인데, 官員任用의 辞令書(告身)이다. 文武官 四品以上의 告身과, 堂上官 妻告身이 王國文書이고, 奉敎告身인 文武官 五品以下의 告身과, 三品이하 妻告身은 官文書라고 할 수 있다. 이 分類의 規準은 敎旨에 繩는 寶로 別區되는데, 寶는 「施命之寶」를 安한다.

國忌錄：임금이나, 王侯의 죽어난 國家の 墓事에 對한 記錄이다.

國書：外交 文書로서, 對倭·野人 文書인데, 日本·野人과의 外交文書이다.

軍令狀：國內 官公文書로서, 官→官 公文書이며, 兵書 文書인데, 軍令을 指示하는 文書이다.

郡守治績：郡守의 功績을 남긴 記錄이다.

軍案：軍籍임.

根脚：國內 官·私文書로서, 刑曹 文書인데, 罪인의 生年月日과, 容貌과 그의 祖上을 記錄한 文書이다. ←推案·結案

衿記：분깃이라는 말이다. 家長이 그의 財產, 主로 奴婢나, 土地를 分與해 준 文書이다.

(給馬)有旨：國內 王命, 官·公文書로서, 騞馬를 내어주는 王의 分부 文書이다.

(祈告)祝文：國內 國王文書로서, 水旱·戰伐등의 「祈」와, 尊號, 頒敎 등 나라의 大事의 경우는 「告」로서 祈祭處에 올리는 祝文이다. 이상 祭文과, 祝文은 國家의 規模로써 하는 面에서 私家의 그것과 別되어야 할 것이다.

祈告文：國內 佛·儒家文書로서; 私對佛·儒 文書인데, 東國李相國集의 「大

藏經板君臣祈告文」과 같이 上天 諸佛에게 祈告하는 글로 願文의 一種으로 보아도 좋다. ←祭文.

(起復)出依牒：國內 官公文書로서, 官→官(民) 禮典文書인데, 父母의 薫中에 처음으로 出仕함을 命하는 것이다.

■

內賜·宣賜記：國內 國王 文書로서, 國王이 承旨로 하여 금 草押刻하여 印行된 書籍을 官員에게 頒賜하는 文記이다. 대개 表紙 裏面에 書한다. 「宣賜之印」, 「內賜之印」을 安한다.

內旨：王妃의 傳旨 命令이다.

奴婢傳繼文券：官刑曹文書로서, 子息이 없고, 奴婢 文券이 이루어지지 않은 死者의 奴婢를 傳繼할 수 있는 族親에게 限寸 分給하는 文書이다. 이로써 奴婢를 傳得한 者는 期年 以內에 官의 立案을 받아야 한다.

錄券：國內 國王文書로서, 王→臣 公文書인데, 國王이 功臣에게 내리는 文券이다. 功臣 錄券이라고도 한다.

祿牌：國內 官·公文書로서, 王→官 公文書인데, 官員의 祿俸 證書이다.

論報：國內 官文書로서, 官←官 公文書이며, 刑曹 文書인데, 地方官이 下僚罪人의 罪行을 論劾하여 報告하는 文書이고, 監司의 論報이다.

■

單子：國內 王←臣 私文書로서, 單子는 요지음의 替換인인데, 간단한 解縁을 아뢰는 글이다. 對國王文書라고 하지만 官僚封建下에서의 組織構造上의 문제이고, 官에서 處理되는 것이 普通이다. 即, 「問安單子」「下直單子」「祇受單子」「六行單子」「處女單子」등의 文書이다. 이 單子에 日食單子, 月食單子, 水標單子, 相避單子, 紿由單子, 薦單子(守令을 蘭與하는 單子)등이 있다.

短札：짧게 쓴 便紙.

達辭：1) 王世子가 摄政할 때에 논죄에 관하여 임금에 아뢰는 글이다.

2) 事理에 通達한 말이다.

畠券·明文：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田畠 賣渡 證書이다.

答通：國內 淮公文書로서, 通文에 대한 答이다. 地方 儒生들의 通文에 대한 成均館 試義等의 答通등이 있다.

都錄：사람이나, 物件의 이름을 통털어 적은 目錄이다.

到配狀：國內 官公文書로서, 官←官 公文書, 또는 刑曹 文書인데, 罪人이 配所에 到着함을 그 고을 守令이 刑曹에 보고하는 文書이다.

(導掌)差帖：官家 淮公文書로서, 官家에서 官村(賜牌地)에 두고 있는 導掌(田監官)에게 내려주는 差帖으로 帖文과 같은 것이다.

導掌文記：李朝때의 官屯田을 管理하는 吏員이 官이나, 宮에 每年 일정한

賭租를 바친 文書이다.

賭租記：남의 논, 밭을 빌려서 부자고 그 세를 해마다 내는 벼(賭地)이다.

度牒：國內 官 公文書로서, 官→僧 公文書이며, 禮曹 文書인데, 「法典·禮典·度俗」條에 따라 僧이 불者를 神宗이나, 教宗에 告하여 試驗보기 하고, 本曹에 報하면 俗文하여 丁錢을 收納하고 내어주는牒旨이다.

(敦寧)單子：國內 宮家 私文書로서, 王家の 親戚의 戶籍을 記載하기 위한 申告 單子이다.

膳諭：議政과 儒賢에게 勉勵를 권하는 일금의 말이다.

膳給·帖文：國內 官文書로서, 公文書인데, 官衙에서 發給하는 證明書이다.

等狀：여러 사람의 이름을 엮어서 씨官廳에 어여한 要求를 하소연하는 일이 있다.

■

令：獨斷가운데 말하기를 「天子命令之別名 命出君下臣名曰命, 令奉而行之曰令」이라 하였다. 令과 命의 區別은 春秋時代까지 天子의 級音을 大事에 있어서는 命이 되고,小事에는 令이 되었는다.

令書：國內 東宮(王世子→臣) 公文書로서, 王世子가 代理할 때 發하는 命令(王의 敎書와 같음)이다. 이와 아울러 臣下의 上疏 文書가 東宮에게는 上達文書가 된다.

路文：國內 官 公文書로서, 官員이 到着하는 時日을 미리 前路에 通知하는 文書이다.

路引：國內 官 公文書로서, 禮曹 文書인데,

1) 旅行證明書이다.

2) 休暇로 故鄉에 돌아가는 軍士에게 發給하는 證書이다.

3) 負擔 商의 行商을 許可하는 證明書이다.

賴溢敎旨：王이 臣下에게 신호를 내려주는 文書이다.

□

馬帖：國內 官 公文書로서, 官→民 兵曹 文書인데, 馬를 賞給하는 證書이다. 試射에서 施賞할 때의 馬帖은 本人의 願에 따라 編帛나, 纏布로 代給받을 수 있다.

輓章(輓詞)：國內 私對神 文書로서, 사람이 죽었을 때, 親知들이 지어 들고 가는 輓歌이다. 家狀같은 헤에 이 輓章이 記載되어 있는 境遇가 많다. 즉으로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로서, 정·지·별·비·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의 뒤를 따르게 함.

望記：國內 淮公文書로서, 學館에서 幾大등 賤人社會에 이르기까지 所任의 推薦文이며, 館의 掌任·薦望記이다.

明文(土地·家舍·買賣·債權·婢)文

記：土地나 家舍를 賣買하는 文記로서 牌旨·牌子(비자), 山地文券, 契券, 家舍文券, 債用文券, 婦文券 등이라고도 名稱한다. 이들은 다 「羽文」으로 總括된다.

募緣文：國內 佛家文書로서, 私文書 인데, 佛寺에서 寺刹을 建造하거나, 佛經을 印行하거나, 佛像을 塑造하기 위하여 檻越이나, 一般大眾의 布施를 받기 위한 文書이다. 여기서는 主體가 佛家가 된다.

墓誌：죽은 사람의 이름, 官位, 行蹟, 子孫의 이름, 生死葬 年月日 등을 새겨서 棺과 함께 畏 물는 들이나, 陶瓶, 또는 거기에 새긴 글로서 擔誌宅兆라 한다.

問答記：한쪽에서 묻고 다른 한쪽에서 대답함을 말한다.

文報：國內 官文書로서, 官→官 公文書이고, 共通文書인데, 月末에 下級官衙에서 上級官衙에 그 所管事를 報告하는 月末 報告書이다.

問情記：남의 나라의 배가 처음으로 港口에 들어 왔을 때 官吏를 보내어 그 사정을 묻는 일이다.

文牒(文狀)：官衙에서 쓰는 書類이다.

勿禁帖, 閑帖：官 公文書로서, 郡衙文書인데, 守令이 發給하는 許可, 内지身分의 證明書이다.

(勿侵)帖文：國內 官 公文書로서, 兵曹文書인데, 功臣의 後孫에게 軍役·雜役을 免除하는 帖文이다.

民狀抄錄：民狀은 雙方의 訟事, 請願 같은 것에 관한 書類이다.

密敍：國內 國王 文書로서, 王→臣 文書인데, 國王이 生前에 宗親이나, 重臣에게 秘密히 부탁한 秘密文書이다.

曰

頒教文(頒赦文)：國內 國王文書로서, 王→民 公文書인데, 國王이 三節目이나, 庚事가 있을 때에 내리는 글이다. 教令의 경우, 頒赦文이라 한다.

發行狀：外方에서 錢布를 上納할 때에 發行(떠나는 것)함을 알리는 文書이다.

榜(文)：國內 結社·私對一般 文書이다.

榜目：科學에 급제한 사람의 姓名을 적은 것이다.

白牌(教旨)：國內 國王文書로서, 王→臣 文書인데, 生員·進士科 合格 證書이다. 寶는 「科學之寶」를 安하였다. 小科에 급제한 生員이나, 進士에게 주는 贈封 종이의 證書이다.

白活：陳想하는 것이다.

報告書：報告하는 文書인데, 報狀이라고 한다.

報償文記：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물건의 償券이다.

保音紙：國內 淮公文書로서, 商品의 代價에 대하여 發行하는 短期이음이다.

復戶文書：國內 官 公文書로서, 兵曹文書인데, 忠臣·孝子에게 兵役(軍保)를 免除하는 文書이다. 兵曹에서 管掌한다. 위는 王族, 威室로부터 孝友, 節行의 德行者·軍士 및 有身役者·內需司 奴婢·僧侶 등에게 賦役을 免하는 文書이다.

封書：1) 封봉을 封한 便紙이다.

2) 王이 宗親이나, 近臣에게 내리는 秘書이다.

3) 王妣가 親庭에 보낸 私文書이다.

封書(傳旨)：王→臣文書로서, 國王이 喻行御史를 任命할 때 내리는 密敍이다.

封爵：爵號를 備三望하여 受點하거나自身 書下한다.

赴聽狀：國內 官文書로서, 禮曹文書 인데, 科學에 나아간다는 通知書이다. 守令이 京試官에게 올리는 書狀이다.

分衿文記, 私會文記, 成給文記：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家長이 그의 財產, 주로 奴婢나, 土地를 家族에게 分與해 준 文書이다. 이 今衿文書는 分財文書라고도 하여 衿記(깃기), 衿記(치마기), 衿記(분깃), 衿得(깃득一分財로 얻은 財產)이라고 한다.

分撥：朝報에 요항이 있을 때에 조보를 發行하기 前에 먼저 배껴드리는 일이다.

不忘記：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오늘의 覺書와 같은 것이다. 春香傳에서 李道令이 春香에게 써주었다는 不忘記는 婚姻에 대한 覺書라고 볼 수 있다. 이不忘記에 있어서도 對者를 「一前不忘記」라고 밝히고, 「右不忘記段」으로 始作하여 끝에 「告官卞正事」로 끝맺고 있다.

批答·下批：國內 國王 文書로서, 官員의 上疏·呈辭에 대하여 王의 裁可를 表示하는 副文書이다. 말하자면 上疏에 관한 임금의 下答이다.

(婢文卷)明文：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奴婢로 妻子를 賣渡하는 證書이다.

人

斜給：下賜 하여 주는 것으로서, 일정 賦와 라고도 한다.

(士夫家舍)牌旨(비자)：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士大夫들이 家舍를 奴婢의 이름으로 賣渡하는 證書이다.

賜送記：임금이 臣下에게 내리어 보낸 것을 적은 글이다.

私通：國內 官準公衙前文書로서, 新延吏가 本府 作廳에 報告하는 書狀이다.

賜牌·王牌：國內 國王 文書로서, 王→臣 文書인데, 王族, 또는 功臣에게 奴婢, 土田(林野·田畠) 등을 下賜하는 文書이다.

私謚：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私로이 주는 謚號이다. 謚號는 國王의 경우 中國에 奏請해서 올리는 것이다, 王이 上王에게 올리는 것은 私謚이고, 官員의 경우, 國王에게 譲謚하여 받는 것이

나, 私私로이 주는 謚號를 私謚라고 한다.

私和明文：1) 訟事를 和解함.

2) 원한을 풀고 서로 和平함.

朔末狀：國內 官 公文書로서, 共通文書인데, 月終文報(月末報告書)이고, 守令이 上級官衙에 내는 月末報告書이다.

山地文券·明文：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先山과 墓地를 放賣하는 證書이다. 山坂文記：1) 山에 對한 文記이다.

2) 土地文記이다.

上書：國內 上東宮 文書로서, 東宮←臣 文書인데, 軍臣이 東宮에 대하여 올리는 文書이다. 獨政하는 東宮에 대하여 報告하는 文書를 「狀達」(王의 狀啓에 대하여), 「達本」「申本」(王의 奏本에 대하여)이라 하고, 國王에게의 三司合啓와 같은 것은 「三司合達」이라 한다.

(上) (疏狀)：國內 上奏 文書로서, 王←臣私文書인데, 國王에게 올리는 上奏文書이다.

上言(原情)：國內 王←民 私文書로서, 現職 官員이 아닌 草昧의 人, 및 私賤들이 國王에게 올리는 文書이다. 이는 「雪冤擊錘」, 「復官爵」, 「立后事」, 「先瑩山訟案」에 限定된다. 普遍 王이 動盪할 때에 途中에서 올리거나, 「申聞鼓」를 뚜드려고 올리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는 時代에 따라서는 稽은 諭議가 있었다.

(常人)(家舍文券)明文：國內 私對私 文書로서, 常人들의 家舍 賣渡 證書이다.

(上尊號)冊寶：國內 王←(王世子, 世孫, 百官大臣, 宗親)百官으로서, 王에게 尊號를 올리는 文書이다. 寶는 「施命之寶」正本, 副本이 있고, 「諱號單子」가 있다.

上奏文：奏와 뜻이 같다.

上表文：表를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다.

書簡：便紙이다.

書契：日本政府와 往來하면 文書이다.

書目：國內 官·公文書로서, 官→官 公文書이며, 官 共通文書인데, 報牒에 그 大概를 記述하는 것을 書目이라 한다.

書狀·書札·書：國內 私文書로서,個人間의 往復의 書簡인데, 「簡札」「書翰」등으로 古文書 중 많이 傳來되고 있다. 그러나 國내에 남아 있는 것은 高麗 高宗 전후가 上限이고, 王亂前반 하여도 稀少 價値가 있다.

宜麻文(教旨)：國內 國王文書로서, 王→臣文書인데, 朝臣에게 几杖·致仕·奉朝質을 宣하는 文書이다.

般文證·船都錄：國內 淮公文書로서, 오늘의 船荷 證券, 또는 貨物 相換證이다.

繼物目錄：남에게 繼賜하는 物品을 記錄하는 臨帳이다.

(차호에 계속)